

## 역외적용 및 로컬서버요건의 통상규범 양립성에 관한 고찰

###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s, Local Server Requirements and Compatibility with Trade Norms

이 한 영 (Han Young Lie)\*

#### 국문초록

본고는 통신·방송 분야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일부 법률개정안 상의 포괄적 역외적용 조항 및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의 주요 실체규범과 양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GATS 및 한미 FTA 내에 역외적용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근본 취지 및 분쟁선례에 비추어 볼 때 법 규정 전체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의 정당화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될 개연성도 존재한다. 고정사업장(서버)의 국내 이전 의무화가 국경 간 공급이라는 외국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사실상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로컬서버요건이 한미 FTA 현지주재 조문 상의 의무와 상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역외적용, 로컬서버요건,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GATS, 한미 FTA

※ 논문접수일: 2018. 9. 21, 수정일: 수정없음, 게재확정일: 2018. 11. 8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E-mail: [lee10@cau.ac.kr](mailto:lee10@cau.ac.kr)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wo clauses included in recent amendments of bills governing th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s, namely those of the comprehens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nd local server requirement. The central concern is whether those clauses are compatible with the substantive rules under the GATS and the KORUS FTA. Our study concludes that despite the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in the GATS and the KORUS FTA,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 in its entirety is unlikely to be justified in light of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WTO Agreement and its jurisprudence. Likewise,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is highly likely to contravene the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s under the GATS and the KORUS FTA. This is because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leads to 1) total prohibition of foreign service providers' cross-border supply of services by mandating the transfer of their permanent establishments (servers) to Korea; and to 2) de facto discrimination by distorting the terms of competition between foreign and local providers of like services. In contrast to recent media reports, the local server requirement may contravene the country's obligations under the KORUS FTA.

**Key word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 Local server requirement, Market access, National treatment, GATS, KORUS FTA

## I.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시화된 글로벌 인터넷 환경은 상품(Goods), 서비스(Services), 지적재산권(IPRs) 등을 3대축으로 하는 기존 다자통상규범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반세기에 걸쳐 오프라인(offline) 무역 중심으로 발전해 온 다자통상규범은 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 닥친 온라인(online) 무역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법적 진공상태(legal vacuum)’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WTO의 논의 출발점이다. 동 각료회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sup>1)</sup>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첫째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duty-free moratorium)<sup>2)</sup>이고, 둘째는 전자상거래의 분야별 쟁점 검토 작업의 추진이다.<sup>3)</sup> 안타깝게도 근 20년이 지난 2017년 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이상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 합의마저도 회원국 간의 잠정적·정치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관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sup>4)</sup>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sup>5)</sup>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를 공히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 분야에 비해 서비스 분

1)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O Ministerial Conference 2nd Session, WT/MIN(98)/DEC/2, 18 and 20 May 1998.

2) 동 각료선언문은 “회원국들이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현행 무관세 관행을 유지한다.(members will maintain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until the next Session.)”고 기재하고 있다.

3) “Ministers, ~ Declare that The General Council shall ~ establish a comprehensive work programme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ing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those issues identified by Members.”

4) WTO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제I:1에 따르면, 각료선언문은 WTO협정상의 ‘적용협정(covered agreement)’이 아니므로 전자적 전송에 대해 한시적 무관세 위반이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사항은 아니다.

5) Development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Note by Secretariat, WT/COMTD/W/51, 23 November 1998, p. 2.

야에서 훨씬 더 지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소비자와의 물리적 대면을 전제하지 않는 상품과 달리, 무형재(intangibles)인 서비스는 소비자와의 물리적 대면 없이는 공급될 수 없는 재화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과거 많은 경제학 교과서가 서비스를 ‘비교역재(non-tradables)’로 정의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하에서 서비스는 더 이상 무형재도 아니고, 비교역재도 아니다.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대상으로서는 상품보다 서비스의 비중 및 중요도가 더 높다. 배송(delivery) 이외의 거래단계만이 온라인을 통할 수 있는 상품과 달리, 다수의 서비스들은 이제 디지털콘텐츠의 형태로 국경을 초월해 온라인 배송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ITC(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전자상거래를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sup>6)</sup> 무역이라고 정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다자통상규범의 과제는 협정 간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다. GATT에 비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sup>8)</sup>이 전자상거래로부터 더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간 ‘공급방식(mode of supply)’의 동조화 경향이 대표적이다. 서비스무역의 무게중심이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sup>9)</sup>로부터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sup>10)</sup>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와의 물리적 대면에 의한 무역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의 사이버(cyber) 대면만으로 실현되는 서비스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 규제

6) 쉽게 말해, 과거에는 테이프, CD 등 물리적 매개체(carrier medium)에 실려 거래되었지만, 인터넷보편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 거래가 완결되는 재화이다.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게임, 서적 등이 해당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또는 물리적 전달 매체 중 어느 방식으로도 이용자에게 전달이 가능한 모든 디지털콘텐츠를 의미한다.

7) “digital trade: defined in this report as the delivery of products and services over either fixed-line or wireless digital networks. This definition includes U.S. domestic commercial activity as well as international trade. It excludes commerce in most physical goods, such as goods ordered online and physical goods that have a digital counterpart such as books and software, music, and movies sold on CDs or DVD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3, xii).

8) 이하, 간략히 ‘GATS’로 지칭.

9) “supply of a service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GATS 제I:2조(c).

10) “supply of a service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GATS 제I:2조(a).

당국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국경 간 공급 방식에 의한 서비스무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던 과거에 비해 이용자 권익 보호, 조세포탈 방지 등 국가적으로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measure)’<sup>11)</sup>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서비스공급자가 일국의 실효적 관할권(jurisdiction) 밖에 주재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무역 자유화라는 국제사회 공감대를 중시하자니, ‘규제의 역차별’이라는 국내적 비판이 규제당국의 발목을 잡는다. 한 마디로, 전자상거래는 규제당국의 ‘존재이유(raison d'être)’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국내 통신 및 방송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일련의 법률개정안은 전자상거래관련 소관부처는 물론이고 국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 법률개정안들이 국경 간 공급 방식에 의한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에 대해 향후 전향적·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업법 개정안)’<sup>12)</sup>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 개정안)’<sup>13)</sup>은 공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sup>14)</sup> 개정내용을 포함한 통신사업법 및 IPTV법 전체를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jurisdictional claim)’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sup>15)</sup>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server)’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6)</sup> 이하 논의에서는 편의상 그러한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조치를 간략히 ‘로컬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으로 지칭한다.

11) 일국의 조치는 해당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제정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은 물론이고 각종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 등을 포괄하며,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 비정부기관도 조치의 주체로 인정된다. GATS 제I:3조(a) 참고.

12) 의안번호 14621, 2018. 7. 30.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3) 의안번호 15286, 2018. 9. 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14) 통신사업법 개정안 제4조의3(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IPTV법 개정안 제3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5) 의안번호 15272, 2018. 9. 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1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5조 4항.

상기 3개의 법률개정안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용자 보호, 국내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역차별 해소 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확보 등을 그 제안이유로 들면서, 인터넷포털사업, 인터넷동영상사업(OTT)<sup>17)</sup>, 또는 콘텐츠제공사업 분야의 대형 글로벌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해당 대형 글로벌사업자들은 우리나라의 실효적 관할권 밖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경 간 공급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검색엔진(search engines)서비스,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지털 동영상서비스, 각종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해 온 서비스공급자들이다. 공교롭게도 그러한 대형 글로벌사업자들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미국계 서비스공급자들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에서,<sup>18)</sup> WTO 회원국이자 한미 FTA(KORUS FTA) 협정당사국인 미국 정부가 상기 3개의 법률개정안들을 수수방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동 법률개정안들이 과연 서비스무역의 관점에서 무역 친화적일까?”라는 의문이 본고의 작성 동기이다. 특히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포함된 로컬서버요건에 있다. 국경 간 공급의 상업적 활용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로컬서버요건(local server requirement)이 과도하게 무역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떤 통상법적 근거에서 그러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 요건은 실효적 관할권(jurisdiction) 밖에 설치된 서버의 국내이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에 포함된 역외적용의 구체적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일 우리 정부가 통신사업법 및 IPTV법 역외적용을 위한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일견 그의 일한인 로컬서버요건의 협정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역외적용은 물론이고 그와 직결된 로컬서버요건은 서비스무역에 관해 우리 정부가 준수해야 할 국제통상협정 상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7) 인터넷동영상사업(OTT: Over The Top)은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Top’은 TV 셋톱박스로서, 동 사업 초기에 TV 셋톱박스를 달아야 서비스가 가능했었기에 이를 ‘OTT’로 지칭하게 되었다. 지금은 스마트폰, PC 등 TV 이외의 단말기를 통해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18) 예컨대, IPTV법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이유에서 거명되지 않은 미국의 페이스북, 훌루(Hulu), 아마존, 컴캐스트(Comcast), 그리고 프랑스의 데일리모션(Dailymotion)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 본고는 통신사업법 및 IPTV법 규정 전체의 역외적용이 통상법적으로 유지 가능한 조치인지를 우선 논의하고, 그 구체적 사례인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의 로컬서버요건에 대해서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의무 등 국제통상협정의 주요 실체규범과의 양립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의 분석은 동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 미국이라고 전제하며, 그에 따라 로컬서버요건의 양립성 분석을 위해 고려되는 국제협정의 범위도 한미 양국이 공히 회원국(당사국)인 GATS 및 한미 FTA로 한정한다. 또한 조문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GATT 및 WTO 하의 분쟁선례에서 패널 및 상고기구가 내린 평결내용을 참고한다.

## II. 통신사업법 및 IPTV법 개정안의 역외적용 조항

일국이 무역과 관련하여 취하는 사실상 모든 조치는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무역상대국 이해당사자들의 준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역외적용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모든 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역외적용 조치라 하더라도, 경제규모, 정치력 등 협상력(negotiating leverage)이 작은 국가(군)보다 큰 국가(군)가 그러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 즉 무역상대국 이해당사자들의 조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예컨대, 최근 유럽연합(EU)이 시행에 들어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up>19)</sup>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준수의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sup>20)</sup>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해당국의 조치를 거부함으로써 감내해야 할 기회비용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WTO협정은 당사국 조치의 ‘관할권 허용범위(permissible jurisdictional reach)’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sup>21)</sup> 이는 한미 FTA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역외적용 조치를 도입·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간략히 ‘GDPR’로 지칭.

20)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조성은·민대홍 (2018)을 참고.

21) Cooreman, B.E.E.M. (2016, 67-72).

이러한 관점에서, 회원국의 역외적용 조항 자체를 두고 WTO협정 및 한미 FTA 하에서 역외적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WTO협정 및 한미 FTA 위반 요소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실용적 의미가 크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의 맥락에서 역외적용에 내재한 일방적(unilateral)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역외적용에 의하는 조치의 범위가 얼마나 포괄적(comprehensive)인지, 그리고 역외적용에 기초하는 개별 조치들이 WTO협정 및 한미 FTA의 근본취지와 협정상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일 역외적용 조항의 일방성 및 포괄성이 매우 강하다면, 그에 비례해 협정위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할 경우 WTO협정 및 한미 FTA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외적용 조항의 일방성이나 포괄성이 없다 해도 역외적용 효력에 의하는 개별 조치 하나하나가 시장접근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등에 저촉되거나,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이 명백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WTO협정 또는 한미 FTA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WTO협정 및 한미 FTA에 역외적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WTO 판례법 하에서도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역외적용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분쟁선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분쟁선례는 ‘미국-참치-돌고래 사안(US-Tuna-Dolphin I)’<sup>22)</sup>이다. 동 사안의 패널은 미국이 취한 ‘계쟁 조치(measure at issue)’에 대해 GATT 제XX조(일반적 예외)(b)<sup>23)</sup>와 관련한 역외적용 효력을 부인한바 있다.<sup>24)</sup> 역외적용을 용인한다면, “GATT가 더 이상 모든 계약국단(contracting parties)<sup>25)</sup> 간의 무역을 위한 다자통상규범이 되기보다, 오히려

22)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US-Tuna-Dolphin I), DS21/R-39S/155, 3 September 1991. 참고로 동 패널보고서는 1991년 회람되었으나, 당사국인 멕시코가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역외적용 문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만한 가치는 있다.

23)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such measures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 ; (b)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 .”

24) Panel Report, US-Tuna-Dolphin I, paras. 5.27 - 5.28.

25) 정식 국제기구인 WTO와 달리, 국제기구 설립에 실패하여 협정문만으로 가동되어온



동일한 국내규제(internal regulations)에 의하는 제한된 계약국단 간의 무역에 한해서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sup>26)</sup>는 것이 당시 패널 평결의 논리였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모든 GATT 계약국단이 스스로의 국내기준을 다른 회원국에게 강제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 결과는 혼란(chaos)과 무질서(anarchy)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27)</sup> 정리하자면, 회원국이 어떤 특별한 조치의 역외적용에 대해 GATT 제XX조, GATS 제XIV조 등 일반적 예외 조항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경우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회원국의 국내법 전체를 역외적용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된 WTO 분쟁선례는 전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참치-돌고래 사안(US-Tuna-Dolphin I)의 패널이 일반적 예외와 연관된 단일 조치의 역외적용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부 입장을 보인 사실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상기 논의에 따른다면, 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IPTV법 개정안에 공히 담긴 역외적용 조항은 우선 그 적용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과도하게 무역제한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동 역외적용 조항이 한미 FTA 협정당사국인 미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법 및 IPTV법의 일부 개별 규정이 아닌 법 전체를 역외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IPTV법 개정안이 공히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역외적용의 전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한 전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역외적용의 대상이 사실상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는 통신사업법 및 IPTV법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내외 사업자가 무차별하게 공히 준수해야 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이기 때문에 비차별대우 의무 등 WTO협정 및 한미 FTA 실체규범과의 양립성이 심각하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GATT 체제 하에서 협정가입국을 지칭하는 용어는 ‘계약국(contracting party)’이다. 반면, WTO 체제 하에서는 이를 ‘회원국(Member)’이라는 용어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26) “The General Agreement would then no longer constitute a multilateral framework for trade among all contracting parties but would provide legal security only in respect of trade between a limited number of contracting parties with identical internal regulations.”, Panel Report, US-Tuna-Dolphin I, para. 5.27.

27) T. J. Schoenbaum (1992, 703).

하지만 이는 지극히 도식적·원론적인 견해일 뿐이다. 우선,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해 역외적용을 전제로 하는 통신사업법 및 IPTV법상의 조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무역친화적일 가능성은 사전적으로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GATS가 허용한 서비스 공급방식 가운데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방식에 의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서비스공급자들이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에 의하는 국내 서비스공급자들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의 최근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럽연합(EU)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시행 이후 오랜 기간 치열한 내부논의를 거쳐 2018년 확대·강화된 GDPR을 제정·시행한바 있다. 특히, 동법은 유럽연합 역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경제주체들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제정하고 있다.<sup>28)</sup> 그런데 유럽연합(EU)은 동 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국내규제를 향후 FTA 등 국제통상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해두고 있다.<sup>29)</sup> 이는 GDPR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내부적으로 GDPR의 국제통상협정 저축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신사업법 및 IPTV법 전체에 대한 포괄적 역외적용은 사실상 관리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통신사업법 및 IPTV법 내 규정 하나하나에 대해 GATS 및 한미 FTA와의 합치성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외적용에 기초한 개별 규정 하나하나에 대해 시장접근 의무 및 내국민대우 의무와의 합치성, 국내 산업 보호 목적 여부, 필요성심사(necessity test) 충족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실무적으로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분석 작업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규정 하나하나가 GATS 및 한미 FTA 의무에 합치할지, 저축될지는 그와는 별도의 문제이다.

28) “This Regulation applie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data subjects who are in the Union by a controller or processor not established in the Union, where the processing activities are related to: (a) the offering of goods or services, irrespective of whether a payment of the data subject is required, to such data subjects in the Union; or (b) the monitoring of their behaviour as far as their behaviour takes place within the Union.”, GDPR Article 3.2.

29) Cynthia O’Donoghue, Curtis McCluskey (2018).

만일 통신사업법 및 IPTV법의 역외적용 조항이 GATS나 한미 FTA의 실제 규범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후의 방어기재로서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조항<sup>30)</sup>이 활용될 수도 있겠으나, 동 조항에 따른 예외적 조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조치의 목적이 동 조항 상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ing)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GATS 제XVI조(일반적 예외)의 전문(chapeau)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외 인정 대상에서 배제된다.<sup>31)</sup> 안타깝게도 통신사업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의 역외적용 조항 도입의 목적이 GATS 제XVI조의 한정적 목록에 기재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으로 적시되기보다,<sup>32)</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오히려 동 법들의 제안이유에서 국내 관련시장에서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의 역차별 해소 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확보 등을 거론된다는 점에서 GATS 제XVI조(일반적 예외) 상의 한정적 목록에 열거된 조치의 목적들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혹여 그러한 연관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앞서 미국-참치-돌고래 사안(US-Tuna-Dolphin I)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역외적용에 대한 분쟁판결기구의 입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sup>33)</sup> 결론적으로, 통신사업법 및 IPTV법 상의 역외적용 조항은 GATS나 한미 FTA의 일반적 예외(general exceptions) 조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0) 예컨대, GATS 제XVI조(일반적 예외). 참고로 KORUS FTA 제23.1.2조는 GATS 제XVI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31)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US-Shrimp), WT/DS58/AB/R, adopted 6 November 1998, paras. 118~121;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US-Gasoline), WT/DS2/AB/R, WT/DS4/AB/R, adopted 20 May 1996, p. 22.

32) “ ~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Member of measures: ~ (c)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those relating to: ~ (ii)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and disse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records and accounts; ~ ”

33) 참고로 GATT 및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에 기초해 조치의 정당화를 시도한 분쟁에서 피소국의 승소 빈도는 평균 44개 사안 중 1건에 불과하다.  
<https://www.citizen.org/sites/default/files/general-exception.pdf>.

### Ⅲ.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로컬서버요건

#### 1. 분석대상 주요규정

##### 1) GATS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등 WTO 회원국이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규정은 양허표와의 연관성 하에서 해석되는 시장접근(market access),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등이다. 이 가운데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는 회원국이 개방대상으로 적시한 서비스에 대해서 기재된 제한조치를 조건으로 준수가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방대상 서비스 분야는 ‘포지티브 열거(positive listing)’에 의하므로 회원국이 양허표에 기재한 서비스에 한해, 그리고 제한조치는 ‘네거티브 열거(negative listing)’에 의하므로 회원국이 자신의 ‘양허표(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에 기재한 서비스 분야 각각에 대해 기재된 제한조치 이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국내규제의 경우에는 양허된 서비스에 대해 GATS 조문규정(제VI조)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상기 세 개의 주요 의무 가운데 경험적·상대적으로 분명하고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됨으로써 국가 간 분쟁 빈도가 높은 것은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이다. 이에 대한 위반은 점진적 시장자유화를 위한 협정당사국 간 최소한의 공감대인 기존 제한조치 수준으로의 ‘동결(standstill)’이라는 당사국 간 신사협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서, 시장개방 양허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차별·비차별을 불문한 정량적 제한조치(예: 사업자수 제한),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는 내외국인 차별적인 정성적 제한조치(예: 외국인의 국내회사 CEO 금지), 국내규제는 내외국인 비차별적 정성적 제한조치로 이해하기도 한다.<sup>34)</sup>

##### 2) 한미 FTA

한미 FTA와 GATS 간에는 조문 구조 및 내용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전자가 후자를 상당히 벤치마크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동일

---

34) 이한영 (2007, 50~69)을 참고할 것.

또는 유사한 규정이 양자 모두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에 따른 로컬서버요건의 협정 (불)합치 논거가 한미 FTA와 GATS 간 상이할 개연성은 제한적이다. 물론 양자 간 상이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와 GATS 간 확연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협정문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미 FTA는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은 제11장(투자)의 규정으로,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 및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 등 나머지 서비스 공급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은 제12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규정으로 분리해서 다루는 특이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미 FTA는 제12장의 제12.5조(현지주재, local presence)를 통해 양국 서비스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원칙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sup>35)</sup> 좀 더 구체적으로,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또는 자연인 주재(mode 4) 방식을 통해 서비스무역을 행하는 서비스공급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해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되, 그에 관한 예외적 조치는 현재유보 또는 미래유보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의 또 다른 특이점은 개방대상 서비스 범위를 획정하는 방식에 있다. GATS가 개방대상 서비스 분야만 추려내어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positive listing)이라면, 한미 FTA는 개방대상이 아닌 서비스 분야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negative listing)에 의한다. 따라서 시장개방의 범위 및 효과성 측면에서 한미 FTA는 GATS에 비해 절대적으로 그 포괄범위가 넓다. 미래에 시장에 등장할 서비스를 미리 예견하여 일일이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는 협정당사국이 조만간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 ‘미래유보(Annex II)’<sup>36)</sup> 형식으로 그에 관한 포괄적 규제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한미 FTA는 ‘현재유보(Annex I)’ 형식으로 현행 제한조치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GATS 양허표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조치와 동일한 맥락

35) “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

36) 미래유보에 관한 상세 정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http://www.mofat.go.kr/mofat/fta/eng/e59.pdf>.

에서 협정당사국 간 기존 제한조치로의 동결(standstill)을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 관련서비스의 양허 현황

### 1) GATS

우리나라가 관련 서비스를 양허했는지 여부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및 국내규제 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요건이다. 어떤 서비스 분야를 양허하지 않았다면, 개방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정부가 적어도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한 협정 합치성을 고민할 필요 없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동원할 수 있는 합법적 정책자율권을 보유한다. 로컬서버요건이 포함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적용대상은 기간통신업무, 부가통신업무 및 정보제공(매개)업무를 포괄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sup>37)</sup> 로컬서버요건이 형식적으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sup>38)</sup> 동 개정안의 관심대상은 이 가운데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sup>39)</sup>는 물론이고 사업자 또는 제3자가 제작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제공(매개)업무 및 정보제공(매개)사업자이다.<sup>40)</sup>

GATS 분류기준(W/120)<sup>41)</sup>에 따른 우리나라의 UR 양허표 상에서 동 서비스가 소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는 ‘부가통신서비스(value-added services)’<sup>42)</sup>, ‘컴퓨

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2호.

38) 정보통신망법 제2조 3항.

39) 이하, 간략히 ‘UCC’로 지칭.

4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망 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41) W/120은 문서번호인 MTN.GNS/W/120의 약칭이다.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Note by Secretariat,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MTN.GNS/W/120, 10 July 1991.

42) 부가통신서비스는 정보전송 과정에서 서비스공급자가 고객정보의 변경, 저장 등을 통해 가치를 추가하는 통신서비스로서 W/120에 의하면 전자메일(electronic mail), 음성메일(voice mail), 온라인 정보/데이터 재생(on-line information and database retrieval), EDI

터 및 관련서비스(CRS: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sup>43)</sup> 또는 시청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라고 판단된다. 국제적으로 정보제공(매개)역무의 분류소속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상기 세 가지 서비스 분야의 어느 하나에 또는 중첩적으로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44)</sup> 그런데 부가통신서비스 및 CRS는 UR을 통해 다수의 WTO 회원국들이 전면개방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분야로서,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즉, 우리나라 양허표에는 GATS 분류기준(W/120)에 의해 부가통신서비스 및 CRS에 소속된다고 열거한 각각의 하위 서비스들 모두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인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 방식에 대한 외국인의 출입국관련 제한조치 이외에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sup>45)</sup> 쉽게 말해, 부가통신서비스 및 CRS 분야 전반에 대해 우리 정부가 GATS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새로이 도입·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양허표의 추가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란에서 “등록 또는 운영 중인 부가통신서비스공급자는 데이터전송서비스(data transmission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다.”<sup>46)</sup>고 밝히면서 각주를 통해 그러한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고객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형식 또는 콘텐츠의 변경 없이 전송하는”<sup>47)</sup> 기본통신서비스(basic telecommunication services)라고 규정하고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고도팩스(enhanced facsimile services), 부호/프로토콜 변환(code and protocol conversion), 온라인 정보/데이터 처리(on-line information and/or data processing services) 등을 포함한다.

43) 이하, 간략히 ‘CRS’로 지칭. W/120에 따른 CRS는 자문서비스(Consultancy Services), 소프트웨어 실행서비스(Software Implementation Services), 데이터처리서비스(Data Processing Services), DB서비스(Database Services), 기타서비스(Other) 등 5개 세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보제공(매개)역무는 데이터처리서비스(CPC 843)와 DB서비스(CPC 844)에 관련된다.

44)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C/W/300, 22 June 2009, para. 2.

45)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46) “Registered, operating, value-added service providers are allowed to supply data transmission services.”,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47) “Telecommunication services ~ which transmit and/or exchange the customer's data on a real-time base without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있다.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UR 협상이 불발되고, 결과적으로 UR 타결 이후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에 관한 별도의 후속협상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UR 당시에 타결된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sup>48)</sup> 본격적인 기본통신서비스 분야 협상 추진 이전에 부가통신서비스공급자에게 기본통신서비스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논리의 맥락 하에서, 이는 등록 또는 사업 운영 중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비실시간으로, 전송형태 또는 콘텐츠의 변경 있는(non real-time with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경우, 즉 부가통신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전송서비스 제공도 허용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UCC 제공(매개)서비스는 UR을 통한 부가통신서비스 양허의 일환으로 양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에서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 및 상업적 주재 방식의 ‘동영상 및 비디오테이프의 제작·유통서비스(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와 ‘음향녹음물 제작·유통서비스(Reco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rvices)’에 대한 전면개방 입장을 취한 상태이다.<sup>49)</sup> 이는 UR 당시 우리 정부가 주로 라디오 및 TV방송, 영화상영 등 전통적인 일방향 방송서비스(linear broadcasting) 및 영화시장을 보호하려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로서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불특정 다수(from a point to unlimited multi-points)’에 대한 일방향 전송, 즉 ‘지상파 방송(terrestrial broadcasting)’의 형식으로만 제공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sup>50)</sup> 지금과 같은 인터넷에 기초한 ‘양방향 방송서비스(non-linear or interactive broadcasting)’의 범람을 제대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UR 양허표에 담겨진 우리 정부의 시청각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의도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방송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전면폐쇄, 오프라인 형식으로 제작·유통되는 드라마,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전면개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상기 검토에 기초할 때,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 또는 중개하는 정보제공(매개)역무 자체는 UR 당시 전면개

Sep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48) 부가통신서비스 및 기본통신서비스에 관한 UR (후속)협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한영 (2007, 119~130)을 참고할 것.

49)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ep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50) 방송(broadcasting)의 개념적 정의에 관해서는 이한영 (2007, 335~338)을 참고할 것.



방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형식으로 제작·유통되는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도 전면개방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혹자는 우리나라의 UR 양허표에 기재된 부가통신서비스, CRS 및 시청각서비스가 당시 보편화되지도 않은 인터넷이라는 ‘공급수단(means of supply)’을 전제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관심대상인 정보제공(매개)역무가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양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의 패널은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이상 국경 간 공급(mode 1) 내에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위한 모든 전송수단이 허용된다는 소위 ‘공급모드 내의 기술중립성(intra-modal technological neutrality)’ 원칙을 천명한바 있다.<sup>51)</sup>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의 상소기구도 중국이 양허한 ‘음향녹음물 유통서비스(sound recording distribution services)’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 의하는 경우를 공히 포함한다고 판단했다.<sup>52)</sup> 판례법을 통해 ‘기술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이 GATS 하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신중 서비스 양허 여부를 둘러싼 GATS 차원의 논란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UR 당시 가용하지 않았던 서비스 공급수단(means of supply)으로서 인터넷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부가통신서비스, CRS 및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대한 UR 양허의 일환으로 정보제공(매개)역무를 사실상 전면개방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한미 FTA

부가통신서비스 및 CRS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면개방 입장은 한미 FTA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우리 정부가 그에 관한 현재유보 또는 미래유보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미 FTA 현재유보 내용에 기초하는 것만으로는 정보제공(매개)역무 및 정보제공(매개)사업자에게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어떠한 새로운 제한조치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51) Sacha Wunsch-Vincent (2006), p. 332.

52) Appellate Body Report, China—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WT/DS363/AB/R, adopted 19 January 2010, para. 412.

FTA를 통해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전송서비스인 UCC 제공(매개)서비스가 양허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한편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은 부가통신서비스 및 CRS 분야와 대조적으로 상당히 시장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인 일방향 방송서비스(linear broadcasting)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이사의 국적제한 등 다수의 현재유보를 기재하는 방식을, 그리고 인터넷에 기초한 양방향 방송서비스(non-linear or interactive broadcasting) 분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미래유보를 기재하는 분리·병행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53)</sup>

후자와 관련하여, 한미 FTA 미래유보(Annex II)에는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subscription-based video services)’가 기재되어 있다. 동 서비스는 IPTV와 양방향 방송(interactive broadcasting) 등 이용자의 가입과 요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기반의 방송서비스(non-linear broadcasting)를 주로 의미한다.<sup>54)</sup>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자의 요금 납부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 광고 수입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보제공(매개)사업자의 정보제공(매개)역무와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 간에는 개념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즉, 이용자의 가입과 요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기반 양방향 방송서비스만이 동 미래유보 대상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래유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자의 가입과 요구 납부에 의하지 않는 인터넷기반 양방향 방송서비스는 시장 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한미 FTA 미래유보에는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와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그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 개념의 서비스인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digital audio or video services)’가 기재되어 있다. 그 정의<sup>55)</sup>에 비추어 볼 때, 동 서비스는 현재유보 된 전통적인 일방향 방송서비스와 미래유보 된 가입자 기반 비디오서비스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로컬서비스요건이 적용될 예정인 정보제공(매개)역무가 동 미래유보 적용대상 분야에 소속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견

53) KORUS FTA의 현재유보 목록(Annex I)과 미래유보 목록(Annex II)은 다음을 참고할 것: <http://www.mofat.go.kr/mofat/fta/eng/e57.pdf>; <http://www.mofat.go.kr/mofat/fta/eng/e60.pdf>.

54) KORUS FTA Annex II, Schedule of Korea, p. II-KOR-27.

55) KORUS FTA Annex II, Schedule of Korea, p. II-KOR-32.

정보제공(매개)역무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우리 정부가 그에 관해 새로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조치 등 포괄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문제는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 미래유보 된 조치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사실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대해 유보한 조치는 사실상 국산콘텐츠에 대한 우리나라 이용자의 접근권 보호 목적을 위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sup>56)</sup> 즉, 정보제공(매개)역무가 미래유보 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새로이 적용 가능한 조치는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보호 차원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등 국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확산 등에 필요한 조치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미 FTA의 현재유보에 의하든 또는 미래유보에 의하든 UCC, 드라마, 영화, 음악 등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서비스공급자, 즉 정보제공(매개)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예고한 로컬서버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시장접근 및 현지주재 의무

#### 1) GATS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GATS 제XVI:2조는 특별히 회원국 양허표 상에 별도 명시해야만 합법적으로 유지 가능한 ‘정량적 제한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s)’의 한정적 목록(exhaustive listing)을 제시하고 있다.<sup>57)</sup> 따라서 양허표 상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해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한정적 목록에 속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사안에 따라서는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범위를 엄밀하게 그러한 한정적 목록에 한정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적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모종의 조치도 그 성격에 따라서는 GATS 제XVI:2조 상의 시장접근 제한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비근

56) KORUS FTA Annex II, Schedule of Korea, p. II-KOR-32.

57) 서비스공급자 수 제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 가액 제한, 서비스 총 영업량 또는 총 산출량 제한,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연인 수 제한, 법인체 및 합작투자 형태 제한, 외국 자본 참여 제한 등. GATS 제XVI:2조.

한 사례가 국적 요건(nationality requirement)이다. GATS 제XVI:2조에는 ‘수량쿼터(numerical quota)’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 요건은 일견 시장접근 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장접근에 대해 국적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된다는 점에서 ‘제로쿼터(zero quota)’로 간주된다.<sup>58)</sup>

이 대목에서 필히 언급해야 할 부분은 GATS가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기재할 때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별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9)</sup> GATS 양허표 작성 관행 상, 이는 내국민대우 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GATS는 서비스 공급방식을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및 자연인 주재(mode 4) 등 네 가지로 엄밀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서비스 공급방식의 근본적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무역왜곡(trade distorting) 효과가 증대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예컨대, 국경 간 공급(mode 1)에 대해 아무런 제한조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새로이 시행할 경우에는 설령 GATS 제XVI:2조의 한정적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제한조치가 아니어도 여전히 협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양허표 조건에 따라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자유로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합리적 기대와 달리, 상업적 주재(mode 3) 등 여타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도박 사안(US-Gambling)의 상소기구는 한정적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로쿼터(zero quota)를 인용해 피소국인 미국의 제XVI조 위반을 판정한바 있다. 동 사안에서 미국은 공중도덕을 위해 자국 도박서비스공급자에게 원격공급(remote supply)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유로 안티가(Antigua)의 도박서비스공급자가 원격공급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미국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미국이 UR을 통해 도박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mode 1)에 대해 전면개방을 양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미국의 해당 조치가 원격공급(remote supply)이라는 공급수단(means of supply)에 의해 국경 간 공급 방식으로 제공되는 도박서비스(gambling and betting services)를 사

58) 실제로 독일은 조산서비스 분야의 자연인 이동(mode 4)에 대해 제로쿼터를 기재한바 있으며, WTO 회원국 간 제로쿼터가 시장접근 제한조치의 한정적 목록에 포함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Markus Krajewski (2003, 86).

59) GATS 제I:2조, 제XVI:1조.

실상 전면제한(total prohibition)했다고 판단했다.<sup>60)</sup> 미국이 UR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은 제로쿼터(zero quota)를 부과했으므로 GATS 제XVI조 불합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GATS 제XVI:2조의 한정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로쿼터(zero quota) 이외의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통상 분쟁으로부터 안전할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쉽지는 않겠지만, 협정상대국인 미국이 GATS 제XXIII:3조에 기초해 시장접근 양허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혜택의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를 이유로 들어 제정조치에 대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ase)가 가능하기 때문이다.<sup>61)</sup>

한편, GATS 제XXVIII조(정의)는 상업적 주재(mode 3)를 법인, 자회사, 대표사무소 등에 국한하지 않고 “any type of business or professional establishment”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그러한 상업적 주재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으로 제기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에서 다른 협정상대국 기업에 대한 일방의 과세 권리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널리 사용된다. 상업적 주재(mode 3)에 관한 상기의 GATS 정의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법도 “국내에 사업장<sup>62)</sup>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sup>63)</sup> 이러한 국내 정의도 GATS와 맥락을 같이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서비스공급자의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유무는 과세 권한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오프라인 사업과 달리 온라인 사업의 경우, ‘가상주재(virtual presence or digital presence)’만으로도 거래활동이 가능하므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개념에 기초해서는 효과적 징세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이 온라인 사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sup>64)</sup> 특히 OECD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국내 거주 소비자와 기업 간에 원

60)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US-Gambling), WT/DS285/AB/R, adopted 23 March 2005, paras. 227~233.

61) GATS 제XXIII:3조.

62) 여기에서의 ‘사업장(establishment)’은 고정사업장을 의미한다.

63)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1항.

64) 이신규 (2001), pp. 177~204.

격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내에서 외국 온라인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가 폭넓게 사용·소비되거나, 또는 국내 고객으로부터 그러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요금 지불이 상당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가상주재만으로 고정사업장을 의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sup>65)</sup>

그런데 OECD의 그러한 제안이 회원국 간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도 온라인 사업 분야에 대해 가상주재를 고정사업장으로 의제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정보제공(매개)역무 및 정보제공(매개)사업자 등 외국 온라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물리적 주재형태인 ‘서버(server)’의 국내 설치 유무에 의해 상업적 주재(mode 3) 여부를 판단하여 온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주목하는 인터넷 포털사업, 인터넷동영상사업(OTT), 또는 콘텐츠제공사업 분야 대형 글로벌사업자들<sup>66)</sup>의 서버가 해외에 위치하는 이상, 법적으로 이들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에 의해 정보제공(매개)역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매개)사업자인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로컬서버요건은 비록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취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효적 관할권 밖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규제권한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조치의 무역제한성이 상당히 과도한 조치에 속한다. 콘텐츠제공사업 분야의 대형 글로벌사업자들로 하여금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을 접고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으로 정보제공(매개)역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인데,<sup>67)</sup> 만일 과징금의 부담 또한 실질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 순응하지 않고서는 서버의 국내 이전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자면, 로컬서버요건이 미국-도박 사안(US-Gambling)에서와 유사하게 국경 간 공급(mode 1)에 대한 사실상 전면제한(total prohibition), 즉 제로쿼터(zero quota)로 간주됨으로써 GATS 제XVI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5) Orkhan Abdulkarimli (2015, 102).

66) 예컨대, 구글코리아(2004년 설립), 페이스북코리아(2010년 설립), 넷플릭스코리아(2016년 설립) 등. 이 가운데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상태이며, 페이스북코리아는 스스로를 콘텐츠사업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

67)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의 1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64조의3의 1항 8호.

## 2) 한미 FTA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제공(매개)역무가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가통신 서비스 및 CRS는 한미 FTA를 통해 조건 없이 양허된 전면개방 서비스 분야로서, 우리 정부가 국경 간 공급(mode 1) 및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 사실상 어떠한 제한조치도 부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미래유보 대상인 디지털 오디오·비디오서비스가 정보제공(매개)역무를 포괄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유보된 조치의 범위가 국산콘텐츠에 대한 우리나라 이용자의 접근권 보호 목적을 위한 조치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경 간 공급(mode 1) 및 상업적 주재(mode 3)에 대한 제한조치도 그러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 local presence)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우선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조문이 특히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서비스무역을 행하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무를 정한 원칙 규정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 local presence)의 영문본과 국문본은 각각 다음과 같다: “Neither Party may require a service supplier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 or to be resident, in its territory as a condition for the cross-border supply of a service.”<sup>68)</sup>;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a service supplier)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any form of enterprise)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to be resident) 요구할 수 없다.”<sup>69)</sup> 여기에서 서비스공급자는 통념 또는 협정문 구조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국경 간 공급(mode 1), 해외소비(mode 2) 또는 자연인 주재(mode 4)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무역을 수행하는 인(person), 즉, 법인(juridical person)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다.<sup>70)</sup>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68) <http://www.mofat.go.kr/mofat/fta/eng/e29.pdf>.

69) <http://www.mofat.go.kr/mofat/fta/kor/k29.pdf>.

70) KORUS FTA 제12.13조(정의) 5호.

“한미 FTA 제12.5조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또는 거주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무실 설치나 인력 상주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서버 등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sup>71)</sup> 이러한 입장은 한미 FTA 한국어본에 매우 충실한 해석임이 분명하다. 동 조항이 법인에게서 대표사무소 등 회사의 설립을, 자연인에게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 영어본에 기초할 경우,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의 설명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양국 간 동 조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없이 협정이 발효되었거나, 동 조문의 한미 FTA 한국어본에 일부 오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이든 논란이 되는 문언은 “to be resident”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한국어본에서와 같이 “to be resident”가 “거주자이어야”로 번역되는 것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을 별도의 장(제11장)으로 구분하여 다루는 한미 FTA 협정문의 구조적 특징, 제12.5조(현지주재)에 나타나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ordinary meaning), 조문의 전체적인 맥락(context) 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재할 것”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 조문의 문맥 상 서비스공급자를 법인과 자연인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주재 방식을 구분하여 명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혹자는 동 조문이 암묵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어떤 서비스공급자([a] service supplier)”가 법인이라면, 그 주재의 방식이 “to establish or maintain [a] representative office or any form of enterprise”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사한 맥락에서 자연인인 “어떤 서비스공급자([a] service supplier)”에 대해서도 “거주자이어야 한다(to be [a] resident).”고 표현되었어야 한다. ‘resident’가 ‘거주자’라는 의미의 명사라면, 문장의 맥락 하에서 대표사무소를 단수로 표현했듯이 거주자에 대해서도 단수인 ‘a’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제12.5조에서 이를 “to be resident”로 기재한 것은 외국 서비스공급자로 하여금 자국 영토 내에 “여하한 형태의 기업(any form of enterprise)”의 설립·유지, [또는(or)] “주재하는 것(to be resident)”을 요구할 수 없

71) 해외사업자, 국내 서버 설치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아, 전자신문, 2018년 9월 4일.



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동 조문은 법인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기업(enterprise) 이외의 다른 주재 형태, 예컨대 온라인사업자의 고정사업장인 서버까지를 포괄하는 ‘현지주재요건(local residency requirement)’ 부과 금지 규정에 해당된다. 만일 이를 전제한다면,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에 대한 별도의 유보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정보제공(매개)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 여하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컬서버요건도 부과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하에서 로컬서버요건을 제12.5조(현지주재)에 대한 미래유보로 기재한 바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제공(매개)사업자에게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인 ‘서버(server)’를 국내에 두도록 강제하는 것은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 위반사항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미 FTA 제24.6조는 “이 협정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sup>72)</sup>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한미 FTA 한국어본 및 영어본 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한미 FTA 제12.5조 한국어본에 따른 해석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CLT: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33조(2 또는 그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조약의 해석) 1항 및 3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sup>73)</sup> 결국 로컬서버요건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의해 제12.5조(현지주재)의 해석 문제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에 앞서 제12.5조(현지주재)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sup>74)</sup>

#### 4. 내국민대우 의무

GATS와 한미 FTA는 공히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원칙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GATS는 제XVII조<sup>75)</sup>에서, 한미 FTA는 제11.2.1~2조<sup>76)</sup> 및 제

72)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of this Agreement are equally authentic.”

73) “1. When a treaty has been authenticated in two or more languages, the text is equally authoritative in each language, unless the treaty provides or the parties agree that, in case of divergence, a particular text shall prevail. ~ 3. The terms of the treaty are presumed to have the same meaning in each authentic text.”

74) “The Joint Committee may: ~ (d) issu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as provided in Articles 11.22 (Governing Law) and 11.23 (Interpretation of Annexes) ~ .”, KORUS FTA 제22.2조 3항.

75) “In the sectors inscribed in its schedule, and subject to any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et

12.2.1조<sup>77)</sup>에서 이를 규정한다. 이 가운데 후자가 내국민대우 의무 조항을 두 가지로 분리·도입하는 근본적 이유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상업적 주재(mode 3)와 나머지 네 개의 서비스 공급방식을 각각 제11장 및 제12장에 의해 다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FTA와 GATS의 내국민대우 의무 조항 간에는 전자가 후자를 벤치마크 하여 제정된 사실에 비추어 실체규범의 내용 및 취지 측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협정당사국인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규정을 이용해 WTO협정에 따른 기존의 권리·의무로부터의 면탈을 시도할 수 없음을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하여,<sup>78)</sup> 이하에서는 편의상 로컬서버요건의 GATS 제XVII조(내국민대우) 의무 양립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한조치는 ‘법적으로(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 국적(nationality)에 기초하여 국내 및 외국의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정성적 조치로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상(de facto)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 대비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후자에게 ‘불리한 대우(treatment less favorable)’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역으로,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라 하더라도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 대비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sup>79)</sup>

---

out therein, each Member shall accord to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of any other Member, in respect of all measures affecting the supply of services,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it accords to its own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76)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2. 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ts own investors with respect to the establishment, acquisition, expansion, management, conduct, operation, and sale or other disposition of investments.“

77) “Each Party shall accord to service suppliers of the other Party treatment no less favorable than that it accords, in [like] circumstances, to its own service suppliers.”

78) KORUS FTA 제1.2조.

79) Panel Report, China-Certain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Payment Services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WT/DS413/R and Add.1, adopted 31 August 2012, para. 7.687;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rgentina-Financial Services), WT/DS453/AB/R, 14 April 2016, para. 6.34.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동종의 외국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조치의 ‘목적과 효과(aims and effects)’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EC 바나나 사안(EC-Banana III) 이후 최근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안(Argentina-Financial Services)에 이르기까지 WTO 분쟁의 판결기구가 취한 일관된 입장이다.<sup>80)</sup> 이는 조치의 목적이 가령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시정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도 그러한 사실이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정당화와는 무관하며, 설령 그렇다 해도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가 결과적으로 외국 서비스(공급자)를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조치인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내국민대우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GATS 제XVII조 규정 상, 먼저 비교대상인 국내외 서비스(사업자)가 긴밀한 ‘경쟁관계’에 있는<sup>81)</sup> “동종 서비스 또는 동종 서비스공급자(like service suppliers)”일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전자지불서비스 사안(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의 패널은 그러한 서비스들이 경쟁조건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종 서비스라고 판단했다.<sup>82)</sup> 아르헨티나 금융서비스 사안(Argentina-Financial Services)<sup>83)</sup>의 상소기구도 관련된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그러한 경쟁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GATS 제XVII조의 동종성 분석의 기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sup>84)</sup> 그리고 서비스의 동종성과 서비스공급자의 동종성이 공히 요구되는지가 의문이 될 수도 있겠으나, EC 바나나 사안(EC-Bananas III)의 패널은 관련 서비스공급자가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그러한 서비스공급자는 동종 서비스공급자라고 판단하였다.<sup>85)</sup> 즉, 서비스의 동종성 판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80)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EC-Bananas III), WT/DS27/AB/R, adopted 25 September 1997, para. 241;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106.

81) GATS 제XVII:3조.

82) Panel Report,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para. 7.702.

83) 동 사안은 아르헨티나가 조세 투명성,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금융지원 방지 목적에서 정보교환협정 체결 국가 및 관련협상 개시 요건을 충족한 국가(협조적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비협조적 국가)를 구분하고, 비협조적 국가의 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의 정보교환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된 파나마가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84)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Financial Services, para. 6.34.

85)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그런데 제XVII조는 제XVI조(시장접근)와 달리 조문 상으로는 동종성(likeness) 문제를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86)</sup> 만일 동종성이 서비스 공급방식과 무관하게 판단되는 것이라면, 서비스 공급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서비스공급자는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동종(lik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예컨대, 해외로부터 국경 간 공급에 의해 원격 공급되는 서비스와 상업적 주재에 의하는 서비스가 동종이라면, 그러한 서비스공급자 간 차별은 제XVII조 불합치 사항이다. 하지만 유사한 서비스라도 서비스 공급방식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동종 서비스로 인정된다면 동등한 대우 의무도 동일한 서비스 공급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sup>87)</sup>

이와 관련하여 중국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안(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을 통해 오프라인 기술에 의하든 온라인 기술에 의하든 정해진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내에서는 서비스의 동종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위 ‘공급모드 내의 동종성(intra-modal likeness)’ 원칙이 정립되었음을 이미 거론한바 있다. 내국민대우 의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 의문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상이한 서비스 공급방식을 통해 제공할 경우에도 서비스의 동종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예컨대, OTT서비스를 상업적 주재(mode 3)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 공급방식을 달리한다는 사실로 인해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들을 ‘이종(unlike)’이라고 해야 할까? 한마디로 이는 ‘공급모드 간 동종성(likeness across modes or inter-modal likeness)’ 문제이다.

미국 도박 사안(US-Gambling)은 그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동 사안의 패널이 ‘사법경제(judicial economy)’ 차원에서 동종성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sup>88)</sup> 제소국인 안티가(Antigua)는 자국 도박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mode 1)이 미국 도박사업자의 서비스 공급방식(mode 3)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유로 관련 서비스를 이종(unlike)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

of Bananas(EC-Bananas III), WT/DS27/R/USA, 22 May 1997, paras. 7.322, 7.346.

86) 제XVI:1조는 명시된 서비스 공급방식(mode of supply) 별로 시장접근 제한조치를 기재한다고 규정하는데 반해, 제XVII:1조는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과 자격요건에 따라 내국민대우 제한조치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Subsidies and Trade in Services-Note by the Secretariat, Working Party on GATS Rules, S/WPGR/W/9, 6 March 1996, paras. 28, 29.

88)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6.287.

다.<sup>89)</sup> 그런데 WTO 분쟁사안으로서는 유일하게 과거 캐나다 자동차 사안(Canada-Autos)에서 패널은 ‘공급모드 간 동종성(likeness across modes or inter-modal likeness)’을 수용한바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 사안의 패널은 상업적 주재(mode 3) 및 자연인 이동(mode 4)에 의해 캐나다 영토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와 국경 간 공급(mode 1) 및 해외소비(mode 2)에 의해 다른 회원국 영토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를 동종서비스라고 판단했다.<sup>90)</sup>

이에 기초할 때, 인터넷포털사업, 인터넷동영상사업(OTT), 또는 콘텐츠제공사업 분야에서 국내외 서비스(공급자)가 긴밀한 경쟁관계 하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서비스(공급자)가 국경 간 공급에 의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국내외 서비스(공급자)를 이종(unlike)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로컬서버요건과 관련하여 인터넷포털사업, 인터넷동영상사업(OTT), 또는 콘텐츠제공사업 분야의 외국계 대형 글로벌사업자와 국내 경쟁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동종 정보제공(매개)역무를 제공하는 동종 정보제공(매개)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의존하는 국경 간 공급(mode 3) 방식이 동종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로컬서버요건으로 인해 외국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의 경쟁 관점에서 불리해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조치의 적용대상그룹 구분 기준이 명시적으로 국적(nationality)에 의하는 경우를 “법적(de jure) 차별”, 명시적으로 국적 기준에 의하지 않지만 조치 적용의 결과로 외국사업자의 사업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면 “사실상(de facto) 차별”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외견상 국적에 근거한 차별요소는 부재하다. 법적 차별은 부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차별 부재 시에도 사실상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다르게 대우하는 조치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을 차별하는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약자이므로 대다수 국가가 여성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 하에서 어떤 정부가 여성과 남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업으로 하여금 전일제(full-time) 근로자에 비해 시간제(part-time)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하

89) Panel Report, US-Gambling, para. 3.150.

90) Panel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Canada-Autos), WT/DS139/R, WT/DS142/R, 11 February 2000, para. 10.307.

자. 일견 해당 조치는 성별 구분에 기초한 여성 차별 조치가 아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면, 애기가 달라진다. 해당 조치는 결과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 대비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실상의 여성 차별을 초래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로컬서버요건은 상기 사례와 맥락이 흡사하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기준에 기초해 일정 규모 이상인 정보제공(매개)사업자(1그룹)와 그 미만인 정보제공(매개)사업자(2그룹)로 구분하여 1그룹에 대해서만 로컬서버요건을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한다.<sup>91)</sup> 그런데 만일 1그룹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외국사업자들이라면, 외견상 국적에 근거하지 않는 로컬서버요건이 사실상 외국사업자를 불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sup>92)</sup>가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그룹에 한정된 로컬서버요건 부과는 사실(fact)에 가까울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설령 1그룹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일부는 국내사업자, 일부는 외국사업자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 없이 국경 간 공급(mode 1)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가 고정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국내사업자에 비해 클 것이므로 사실상 외국사업자 차별이라는 결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일부 국내사업자가 이미 로컬서버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결과는 더 자명해진다.

참고로, 다자간 서비스무역을 관할하는 WTO 서비스이사회 문건(S/L/92, 28 March 2001, Attachment 1)에 따르면,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의 사례로서 ‘로컬콘텐츠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s)’을 언급하고 있다. 로컬서버요건이 로컬콘텐츠요건과 내용상 일부 상이성이 없지 않지만, 그 근본 맥락이 상통한다는 점에서 로컬서버요건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리하자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로컬서버요건은 법적 차별(de jure discrimination)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서 제XVII조(내국민대우) 위반으로 간주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9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5조 4항. 자세한 내용은 각주 16을 참고할 것.

92) 변재일 의원, 글로벌 IT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국회위원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2018. 9. 4.

## IV. 결론

국경 간 공급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매개하는 외국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동 분야에서 논란이 되어 온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외국 서비스공급자 간 ‘규제의 비대칭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후자가 국내법상의 각종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권리 행사 측면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사업법 개정안’, ‘IPTV법 개정안’ 등도 그러한 우려가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일국의 규제권한은 GATS, 한미 FTA 등 다수의 국제통상협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 중대 가치이다. 그런데 국제통상협정은 일국의 규제권한이 범세계적 자유무역 진흥이라는 글로벌 사회의 또 다른 중대 가치와의 조화 속에서 행사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즉, 일국의 정당한 규제권한은 적어도 통상법적으로는 무한정의 주권(sovcreignty)을 의미하기보다 국제통상협정에 따른 무역상대국의 권리와 합리적 기대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의 제정 주체는 늘 규제권한과 자유무역이라는 양대 가치 간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상기 3개 법률개정안의 경우에는 특히 더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비교형량의 과정이 요구된다. 동 법률개정안들이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포괄적 역외적용 조항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서비스공급자로 하여금 고정사업장의 국내 이전을 강제하는 로컬서버요건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비대칭성 시정이라는 고려에 의하더라도, 조치의 무역제한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다. 해당 외국 서비스공급자가 사실상 미국 서비스공급자라는 점, 이들이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를 주도하는 해당 분야의 대형 글로벌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극도로 공세적이라는 점 등도 그러한 비교형량의 필요성을 더한다.

본고는 상기 3개 법률개정안에 포함된 역외적용 조치와 로컬서버요건이 자유무역이라는 중대 가치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외적용 조치와 로컬서버요건이 GATS 및 한미 FTA의 핵심 실체규범인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록

GATS 및 한미 FTA가 역외적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의 근본 취지 및 분쟁선례를 고려할 때 포괄적 역외적용이 용인될 개연성은 제한적이라고 사료된다. 로컬서버요건의 경우에도 GATS 및 한미 FTA 상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시장접근 의무의 경우에는 로컬서버요건이 고정사업장(서버)의 국내이전을 강제함으로써 미국사업자의 국경 간 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전면제한(total prohibition), 즉 제로쿼터(zero quota)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내국민대우 의무의 경우에는 국경 간 공급에 기초해 동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사업자의 경쟁조건을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리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제12.5조(현지주재) 의무와 관련해서는 로컬서버요건이 협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달리, 해당 조문에는 협정위반 가능성을 일축하기 어려운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미국 정부가 상기 3개 법률개정안에 대해 수수방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우리 정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것이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GATS 위반을 이유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거나, 또는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한미 FTA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근거해 제소하는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sup>93)</sup> 이 가운데 미국의 선택은 한미 FTA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미국의 협상력을 차지하더라도,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함으로써 미국이 훨씬 더 폭넓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제1.2조(다른 협정과의 관계)가 GATS 및 한미 FTA 내에서 의무별로 당사국에게 유리한 대우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4)</sup> 이는 한미 FTA와의 양립성 분석 결과에

93) KORUS FTA 제22.6조 1항.

94) Art. 1.2(Relation to Other Agreements) : 1. Each Party affirms it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exis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to which both Parties are party, including the WTO Agreement; 2. For greater certainty,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derogate from any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provides for more favorable treatment of goods, services, investments, or persons than that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기초하여 역외적용 조치 및 로컬서버요건의 무역친화성을 판단하기보다, 본고에 서와 같이 한미 FTA 뿐만 아니라 GATS 차원의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 규정 이외에 한미 FTA 제14.21조(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GATS 제VI조(국내규제) 등 관련 실체규범과의 양립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이신규 (2001). 사이버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와 대응방안. 『관세학회지』, 2(2).
- 이한영 (2007).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 FTA까지』, 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286.
- 변재일 의원 (2018. 9. 4). 글로벌 IT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국회위원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30).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6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3).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272.
- 조성은·민대홍 (2018). GDPR 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KISDI Premium Report』, 18-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미 FTA 협정문 (한국어본). <http://www.mofat.go.kr/mofat/fta/eng/e00.pdf>.
- 한미 FTA 협정문 (영어본). <http://www.mofat.go.kr/mofat/fta/eng/e00.pdf>.
- 해외사업자, 국내 서버 설치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아 (2018. 9. 4.). 『전자신문』, 006면.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US-Gasoline). WT/DS2/AB/R, WT/DS4/AB/R, adopted 20 May 1996.
- Appellate Body Report. European Communities-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EC-Bananas III). WT/DS27/AB/R, adopted 25 September 1997.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US-Shrimp). WT/DS58/AB/R, adopted 6 November 1998.
- Appellate Body Repor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US-Gambling). WT/DS285/AB/R, adopted 23 March 2005.
- Appellate Body Report. China-Measures Affecting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Certain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Entertainment Products (China-Publications and Audio Visual Products). WT/DS363/AB/R, adopted 19 January 2010.
- Appellate Body Report. Argentina-Measures relating to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rgentina-Financial Services). WT/DS453/AB/R, 14 April 2016.
- Cooreman, B.E.E.M. (2016). *Addressing Global Environmental Concerns through Trade Measures: Extraterritoriality under WTO La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Dissertation Paper, Leiden University, Hague, Netherlands.
-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C/W/300, 22 June 2009.
- Cynthia O'Donoghue-Curtis McCluskey (2018, April 4).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provisions for cross-border data flows while consultation on GDPR Article 49 guidance closes,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may/tradoc\\_156884.pdf](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may/tradoc_156884.pdf).
-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O Ministerial Conference 2nd Session. WT/MIN(98)/DEC/2, 18 and 20 May 1998.
- Development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Note by Secretariat. WT/COMTD/W/51, 23 November 1998.  
<https://www.citizen.org/sites/default/files/general-exception.pdf>.
-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Markus Krajewski (2003). *National Regul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The Legal Impact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on National Regulatory Autonomy*. Kluwer Law International, Hague/London/New York.

- Orkhan Abdulkarimli (2015). E-Signature and Taxation of E-commerce. *Baku State University Law Review*, 1.
- Panel Report. United States-Restrictions on Imports of Tuna(US-Tuna-Dolphin I). DS21/R-39S/155, 3 September 1991.
-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Regime for the Importation, Sale and Distribution of Bananas(EC-Bananas III). WT/DS27/R/USA, 22 May 1997.
- Panel Report.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Canada-Autos). WT/DS139/R, WT/DS142/R, 11 February 2000.
- Panel Report. China-Certain Measures Affecting Electronic Payment Services (China-Electronic Payment Services), WT/DS413/R and Add.1, adopted 31 August 2012.
- Republic of Korea.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8, 15 April 1994.
- Sacha Wunsch-Vincent (2006). The Interne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the GATS: Lessons from US-Gambling. *World Trade Review*, 5(3).
-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Note by Secretariat.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MTN.GNS/W/120, 10 July 1991.
- Subsidies and Trade in Services-Note by the Secretariat. Working Party on GATS Rules. S/WPGR/W/9, 6 March 1996.
- T. J. Schoenbaum (1992).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rreconcilable Conflic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6(4).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3).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Part 1*. Publication No. 441, Washington D.C. 20436.